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940호
2024. 1. 3.(수)



목 차

◆ 정 정

제901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정정) 2

정 정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9013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(정정)

서울시보 제3939호(2023. 12. 29.)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9013호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」 중 정정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
2024년 1월 3일

서울특별시조례 제9013호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8호 중 “부지경계선으로부터” 를 “부지경계선(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)으로부터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가.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.(제34조제1항제8호)
- 나.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을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.(부칙 제1조)
- 다.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봄.(부칙 제2조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